

議案檢討報告書

- 1 提案者：大田直轄市長
2. 件名：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案件要旨：別添參照
4. 檢討意見：別添參照

위 議案이 대한 檢討 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

1993年 12月 日

産業建設委員會

專門委員 金完圭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徴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書

1993. 12.

産 業 建 設 委 員 會
専 門 委 員

大田直轄市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 討 報 告

이 改正 條例案은 1993年 12月 11日 大田直轄市長이 提出하여 12月 13日 當委員會에 回附되었음.

1. 提案理由

道路法施行令의 改正(1993. 8. 14 大統領令 第13958號)으로 인하여 道路 占用料의 算定基準을 細分化하여 道路에 工作物, 物件, 其他施設을 設置하기 위한 道路 占用的 경우에 지켜야할 基準을 정하여 現行 制度의 運營上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改善補完하여 道路 管理에 萬全을 기할 수 있는 根據를 마련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지금까지는 道路 占用料를 占用面積別로 隣近 土地價格에 一定 比率을 곱하여 算定한 金額으로 하던 것을 수도관, 가스관, 전주 등의 占用事業의 경우에는 이를 定額制로 賦課하도록 함. (案 第 3條)

나. 道路를 繼續하여 2개년도 以上 占用하는 경우 道路 占用料 算定 基準表에 의하여 算定한 年間 占用料가 前年度에 納付한 年間 占用料보다 10퍼센트以上 增加하는 때에는 別表2의 占用料 調整 산식에 의하여 算出한 金額을 徵收하도록 함. (案 第4條)

3. 檢討意見

- 道路占用料徵收條例는 道路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制定되었으며, 1993年8月14日 道路法施行令이 改正되어 道路 占用料 算定基準을 細分化하고 一部 條項을 改正코자 하는 事案임
- 主要 改正 內容은 道路 占用料 算定을 地方稅法施行令에 의한 隣近土地의 課稅時價 標準額을 適用한 事項을 地價公示 및 土地 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에 의한 公示地價를 適用토록 改正하며, 이 경우 地價 上昇이 10%以上 變動할 때에는 3年마다 再調整할수 있는 條項을 新設하였음.
- 또한 그 동안 道路 占用料를 減免해온 韓電, 通信公社등에도 50%를 賦課토록 하며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주, 공중전화등의 施設物에 대하여는 年間 定額制로 賦課토록 改正하는 內容으로 施設物別 占用料 算定基準 및 調整方法을 道路法施行令 第26條의 2와 第26條의 4 規定을 그대로 適用함.
- 條例 改正 內容으로 볼때 占用 收入이 대폭 增加될 것으로 豫想되어 地方財政 擴充의 效果性은 높을 것으로 展望되나 상대적으로 民願 發生이 우려되며, 無分別한 步道 占用등으로 步道가 破損된 部分이 市內 곳곳에 散在하고 있는 점을 勘案할 때 道路管理 및 占用料 賦課 徵收의 效率性 提高에 各別한 努力이 要求됨.
- 아울러 條例 改正 事項은 道路法에 委任 根據가 規定되어 있어 上位法에 저촉되는 部分은 없으며 全般的으로 問題點이 없는 것으로 判斷되므로 原案대로 議決함이 加할 것으로 思料됨.